

EU의 순수증분비용방식 이동망 접속료 제도 분석

Pure LRIC MTR Regulation of EU

변재호 (J.H. Byun)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 책임연구원

목 차

-
- I . 머리말
 - II . EU의 착신접속료 규제 권고안 분석
 - III . EU의 권고안 이행현황
 - IV . 순수증분비용방식 MTR 결정의 영향
 - V . 맺음말

이동망 착신독점력 규제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은 이동망 착신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 MTR)를 원가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가기준으로는 과거 FDC 방식이 채택되어 왔으나 2002년 영국이 “LRIC+” 방식으로 MTR을 결정한 이래 “LRIC+” 방식이 EU를 비롯한 OECD 주요국의 MTR 산정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EU에서 순수증분비용(Pure Long Run Incremental Cost) 방식으로 착신접속료 규제방식 변경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EU 가맹국은 Pure LRIC 방식으로 MTR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Pure LRIC 방식 채택을 원하는 EU 권고안 채택 배경, Pure LRIC 산정 방법론, EU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을 살펴보고, Pure LRIC 채택이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 머리말

이동망의 착신독점 규제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은 이동망 착신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 MTR)를 원가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거에는 역사적 원가(FDC)를 기준으로 접속료를 결정하여 왔으나 2002년 영국 Oftel이 장기증분비용(Long Run Incremental Cost: LRIC)에 공통비를 마크업(mark-up)하는 방식 즉, “LRIC+” 방식을 채택한 이래 “LRIC+” 방식이 EU를 비롯한 OECD 주요국의 MTR 산정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LRIC+” 방식 하에서 MTR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업자 간 보조, 발신요금 인상, 사용량 억제,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평가가 최근 제기되어 왔다[1]. 이에 따라 2009년 5월 EU는 유무선 착신접속료 규제 권고안을 통해 가맹국 규제당국이 순수증분비용(Pure LRIC) 방식으로 유무선 착신접속료를 규제토록 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권고안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U 가맹국들은 순수증분비용방식으로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2011년 4월 1일부터 순수증분비용방식으로 MTR을 규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벨기에,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등도 MTR을 순수증분비용방식으로 산정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Pure LRIC 방식 채택을 권하는 EU 권고안 채택 배경, Pure LRIC 산정 방법론, EU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을 살펴보고 Pure LRIC 채택이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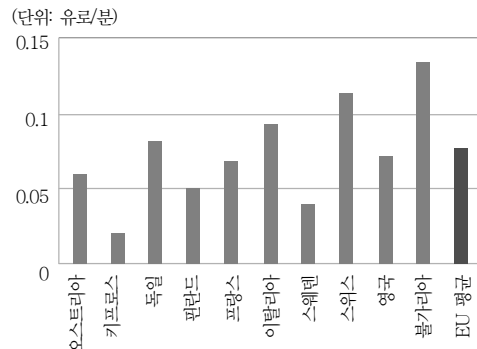
II. EU의 착신접속료 규제 권고안 분석

1. EU 권고안의 개요 및 채택 배경

EU는 2009년 5월 유무선 착신접속료 규제방식

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각국 규제당국(NRA)이 권고안에서 제시한 접속료 산정기준 이행계획을 밝히도록 요청하였다[1]. 동 권고안의 핵심은 착신접속료를 효율적인 사업자의 실제비용(real cost) 즉, 회피가능비용(avoidable cost)으로 산정토록 명시한 것이다. EU는 회피가능비용으로 접속료를 산정할 경우 EU 내 사업자 간 요금 왜곡 현상을 제거하여 이용자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09~2012년 동안 이용자 요금하락 효과가 최소 20억 유로 규모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EU는 권고안 이행 시 회원국 간 MTR 불균형 해소 및 일관된 규제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높은 MTR을 지불하고 있는 유선사업자와 소규모 이동사업자는 대규모 이동사업자와 경쟁에서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U가 유무선 착신접속료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맹국 내 음성착신접속료 규제의 일관성 부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가맹국 대부분이 음성착신접속료를 원가기준 특히 LRIC+ 방식으로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MTR의 국가 편차가 상당한 수준이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9년 1월 기준 EU 평균 MTR은 약 0.076유로이



(그림 1) EU MTR 현황(2009년 1월 현재)

지만 키프로스는 0.02유로, 불가리아는 0.13유로로 평균과의 편차가 상당한 실정이다. 어느 정도의 국가 간 MTR 편차는 원가산정방식의 차이, 사업자의 규모나 기술방식 차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최저치와 최대치 간 편차가 6배에 달하는 상황은 단순히 원가차이만으로 설명이 곤란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국가 간 MTR 편차는 접속료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보조현상을 발생시키는 등 시장왜곡을 초래한다. 둘째, 착신접속료로 인한 경쟁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양방향 접속시장에서 접속에 관여하는 두 당사자는 수혜자인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착신접속료는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착신접속료가 효율적 비용 이상으로 책정될 경우 유무선 간 접속통화(fixed-to-mobile)의 이용 사업자 및 이용자 간 심각한 보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 간 시장 점유율에 차등이 있을 경우 소규모 사업자의 지출 초과현상도 발생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¹⁾ 과도한 착신접속료는 발신요금 인상, 사용량 억제 등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셋째, CPNP 방식의 요금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착신망의 착신독점력 해소를 위함이다. 발신망이 착신망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CPNP 하에서 착신망 사업자는 착신접속료를 인하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가기반 규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여전히 착신접속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원가기준 및 대칭적 착신접속료 적용을 위한 하나의 공통된 접근법 설정이 필요하다고 EU는 인식하고 있다.

1)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발신통화량이 착신통화량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착신접속료가 높을 경우 접속시장에서 지출초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EU 권고안에서 제시된 착신접속료 산정 방법

EU는 착신접속료 산정 방법으로 효율적인 사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한 BUM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쟁환경 하에서는 현행 원가를 기준으로 경쟁하게 되므로, 비효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회수될 수 없으며, 역사적 원가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효율적인 사업자의 비용을 반영한 현행 원가로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원가모델로는 BUM이 적합하다. EU 권고안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BUM 방식 LRIC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간 공통비 및 착신증분이 아닌 비용은 착신접속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LRIC는 증분 통화량 제공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만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 소비를 촉진하며 잠재적인 경쟁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둘째, 착신증분비용은 도매착신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회피 가능한 순수한 증분비용만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회피가능비용이란 해당사업자의 모든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총 LRIC와 도매착신서비스를 제외한 총 LRIC 간 차이를 통해 산출 가능하다. Pure LRIC만을 반영하게 될 경우 트래픽과 무관한 NTS 비용은 자연스럽게 접속료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BUM 모델에서 Pure LRIC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트래픽 비민감(NTS)을 제외한 상태에서 트래픽 민감비용(TS)을 다른 서비스(발신, 망내, SMS, MMS, 광대역, 전용회선 등)에 먼저 배분하고, 착신호는 마지막 서비스(마지막 증분)로 취급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유무선 도매착신서비스를 위한 LRIC는 도매착신서비스가 제3자에게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면, 회피 가능한 비용만으로 한정된다[1].

이러한 EU 권고안의 적용시점은 2012년 12월

31일로 제시되었으며 각국 NRA가 주어진 시간 내에 추천된 원가모델(BUM)을 준비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NRA가 BUM 모델 이외의 방법이 권고안과 동등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입증하면 2014년 7월 1일까지 대체안에 기반을 둔 잠정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가격은 권고안에서 제시된 비용 모델을 실행하는 각국 NRA들이 설정한 착신접속료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고 EU 권고안은 규정하고 있다.

3. EU 권고안의 법적 지위

EU공동체 질서 유지 및 공동시장 형성을 위해 EU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표 1>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EU 조약(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rticle 288에 따르면 EU 권고안은 구속력이 없는 조치(non-binding act)로 구분된다. 그러나 권고안은 가맹국 간 협의 및 투표를 통해 결정되므로 이행 거부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행위이다. 만약 권고안에 대해 특정 가맹국이 수용을 거부하면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도 이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EC Framework Directive(2002/21/EC) Article 19(1)에 의하면 각 가맹국 규제당국은 권고안을 최우선 고려사항("take the utmost account")으로 취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거부를 선택할 경우 유럽위원회(EC)에 해당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III. EU의 권고안 이행현황

1. 영국

EU 권고안 발표 이후 영국 규제당국(Ofcom)은 MTR 산정방식으로 Pure LRIC 방식을 적용키로 결정하고 2010년 4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자문서 형태로 발표하였다. 자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LRIC+ 방식으로 결정된 현행 MTR 규제기간(2007. 4.~2011. 3.)이 종료되는 2011년 4월부터는 Pure LRIC 방식으로 MTR이 규제된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2015년 MTR을 Pure LRIC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를 목표치로 하여 현행(2010/11 회계년도)²⁾ MTR을 단계적으로 인하해가는 점진적 인하³⁾ 방식이 적용된다. Pure LRIC 적용 시 2015년 접속료는 0.69ppm(2008/09 불변가격 기준)이 되며, LRIC+ 방식에 비해 1/2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현행 접속료(2011년 3월 기준 4.3~4.6ppm)와 비교하면 2014/2015년 접속료는 현행대비 80% 하락하게 된다(<표 2> 참조)[2].

<표 2> Ofcom의 MTR 인하 계획

(펜스/분)

사업자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Vodafone/O2/Everything Everywhere	4.18	2.66	1.69	1.08	0.69
H3G	4.48	2.66	1.69	1.08	0.69
기타 SMP 사업자 합리적 조건으로(fair and reasonable term) (28개 사) 접속제공의무					

2) 영국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 종료된다. 2010/11은 2010. 4. 1.~2011. 3. 31.을 의미한다.

3) Ofcom은 점진적 인하 방식을 Glide Path 방식이라 한다.

<표 1> EU 법률체계

구분	성격
Regulation	가맹국의 국내법에 준하는 효력
Directive	가맹국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강제하며 수단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주는 조치
Decision	EU 가맹국 전체가 아니라 일부 가맹국, 또는 특정 자연인 및 법인에게 해당되는 규제
Recommendation (권고안)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의회 및 집행기구에서 공동정책 목표의 개요 제시 및 집행 기준 제시를 위해 제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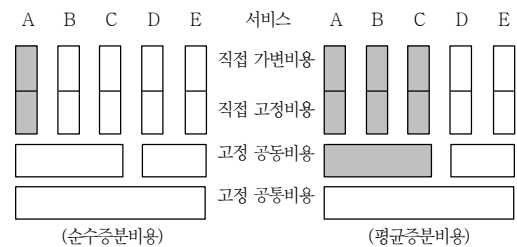
가. MRT 인하의 주 요인

Ofcom은 Pure LRIC 방식 하에서 이동망 착신 접속료가 급격히 하락하게 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데이터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망 공유(sharing) 효과로 인해 음성에 배부되는 비용 비율이 축소되었다. 기지국 등 가입자 접속구간은 음성과 데이터가 공유하게 되는데 관련비용은 트래픽 비율에 따라 배부하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 트래픽 급증은 음성에 배부되는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 비율 축소를 가져온다. 둘째, 3G 기술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 가격이 하락한 점이 반영되었다. 셋째, Pure LRIC 방식으로 이행함에 따라 착신서비스에 배부되던 공통비(joint and common cost)가 제외되었다. 특히 공통비 중 커버리지 구축을 위해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기지국 및 관련 설비 비용이 착신 증분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Ofcom의 MRT 산정모델의 주요 특징

Ofcom이 제시하는 Pure LRIC MTR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TR 산정모델의 주요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Ofcom은 접속료 산정 대상 사업자를 시장점유율 25%의 가상적 사업자로 설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Vodafone, H3G, O2, Everything Everywhere 등 4개 주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20~25% 사이로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25%가 합리적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LRIC 산정은 사업자의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3G Only 사업자는 3G 기준으로 접속료를 산정하며, 2G와 3G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는 2G/3G 혼합접속료를 산정하고 있다. 2G/3G 혼합접속료는 2G 접속료(0.84ppm)와 3G 접속료

(0.58ppm)를 각각 산정한 뒤 통화량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셋째, EU 권고안을 준수하여 음성 착신을 마지막 증분 트래픽으로 처리하는 순수증분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Ofcom이 적용한 접속료 산정방식은 평균증분비용(LRIC) 방식으로 순수증분비용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림 2)에서 평균증분비용은 특정 서비스 그룹(A, B, C) 전체 추가시 발생한 증분비용을 총증분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결과적으로 공동비용이 마크업에 포함된다. 반면 순수증분비용은 특정서비스 전체(A) 추가로 발생한 증분비용만을 해당서비스 증분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공동비용 및 공통비용이 제외된다. 이때 제외되는 공동 및 공통비용은 커버리지 구축 비용, 국사 상면비용, HLR비용 망관리시스템 비용 등이다.



(그림 2) 순수증분비용과 평균증분비용 비교

2. 기타 EU 기맹국의 Pure LRIC 이행계획

EU의 착신접속료 규제 권고안 발표 이후 각 기맹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Pure LRIC로의 이행을 준비 중에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영국은 EU 권고안에 따라 순수증분비용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포르투갈은 2012년을 목표로 이행 준비 중임을 밝히고 있다[3]. 반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약 20여 개 국가는 아직 이행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EU 권고안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까지 이행토록 명시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표 3〉 EU 기맹국의 권고안 이행 계획

구분	EU 권고 이행 및 일정
영국	2011년 4월 1일 이행계획 확정 발표 2014년 4월 1일까지 Pure LRIC 적용을 목표로 Glide Path 방식으로 접속료 인하 추진
오스트리아	EU 권고안에 따른 Pure LRIC 모형 개발 및 2011년 이행 계획 발표
벨기에	2010년 EU 권고 Pure LRIC 모형 개발 및 의견 수렴 중
불가리아	차기 시장조사 시 이행
프랑스	EU 권고 비용 모형 적용
이탈리아	2010년 EU 권고 비용 모형 개발 2011~2012년 이동접속료 적용
리투아니아	2012년 EU 권고안 적용 방침 발표
포르투갈	EU 권고안(Pure LRIC)에 따라 BUM 모델 개발 중
루마니아	차기 시장조사 시 이행

2014년 7월 이후에는 Pure LRIC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EU의 경우 Pure LRIC 방식이 이동망 착신접속료 규제방식으로 보편화될 전망이다[4],[5].

IV. 순수증분비용방식 MTR 결정의 영향

Pure LRIC 방식으로 이동망 착신접속료를 결정할 경우 예상되는 영향은 이용자 측면, 사업자 측면, 규제정책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 순수증분비용방식은 소매요금 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편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접속료는 소매가격 결정의 주요 인풋으로 접속료 하락은 소매가격의 직접적인 인하요인이 된다. EU는 순수증분비용방식 도입시 2009~2012년 동안 이용자 요금하락 효과가 최소 20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fcom도 순수증분비용방식 도입으로 인한 80% 수준의 접속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이동전화 요금패키지의 유연성이 확대되며, 유선의 경우도 유선발신-이동착신(fixed-to-mobile) 요금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이동망사업자 입장에서 순수증분비용방식

도입은 대폭적인 접속수입 축소와 망 이용 대가 하락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동망 접속료는 유선 접속료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동망사업자의 도매수입 중 유선사업자로부터의 착신수입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순수증분비용으로 착신접속료가 한정될 경우 유선 접속료와 격차가 사라지게 되어 접속수입 축소는 불가피하다. 접속수입의 급격한 축소는 망사업자의 투자여력 감소를 초래하여 차세대망 투자 지연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접속료 하락은 MVNO, 재판 매사업자 등 이동망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망사업자의 지배력 약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접속료 하락에 따른 수익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이동망사업자들은 기본료 인상, 데이터 수익 확대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규제정책 측면에서도 순수증분비용방식은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접속료의 대폭적인 하락은 그동안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로 인해 제기된 사업자 간, 이용자 간 보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 트래픽 증분만을 고려하여 접속료를 산정하게 될 경우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그동안 제기된 유선이용자의 무선이용자 보조 논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착신을 마지막 증분으로 처리할 시 대부분의 공통비가 착신증분에서 제외되어 음성/데이터 공통비 배부, 커버리지 비용 처리 등 접속료 산정의 세부 기준관련 분쟁이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접속료를 통한 공통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망사업자들이 이를 가입자로부터 회수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한편, 접속료의 대폭적인 하락은 유무선 간, 기술방식 간 접속료 격차가 대폭 축소되어 기술중립적인 접속료 규제 방식 도입을 촉

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V. 맺음말

이동망 착신접속료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장기증분비용 방식으로 규제되어 왔다. 이때 증분비용은 대체로 평균증분비용을 의미하며 평균증분비용방식 하에서 이동망 착신접속료는 국가 간, 사업자 간 편차가 크고 절대적인 접속료 수준도 높아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EU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2012년까지 순수증분비용방식으로 이동망 착신접속료 산정방식을 변경할 것을 가맹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EU 권고안에 따라 최초로 이동망 착신접속료를 순수증분비용방식으로 변경한 영국에서 평균증분비용 대비 80% 정도 접속료가 하락한 결과를 볼 때 순수증분비용방식 도입은 이용자, 사업자, 규제당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요금 설정 방식, 경쟁 구도, 규제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에서 논의만을 고려하여 순수증분비용방식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IP 망으로 통신망 진화

에 따른 기존 접속료 산정방식의 타당성, 데이터 트래픽 급증 및 이로 인한 공통비 증가, 유무선 간 및 기술 방식 간 접속료 격차로 인한 보조 문제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통의 논의 주제가 되고 있으므로 EU에서의 순수증분비용방식 적용 결과 및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약어 정리

BUM	Bottom-Up Model
CPNP	Calling Party Network Pays
EU	European Union
FDC	Fully Distributed Cost
LRIC	Long Run Incremental Cost
MTR	Mobile Termination Rate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NRA	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NTS	Non Traffic Sensitive

참고 문헌

- [1] EC,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7 May 2009 on the Regulatory Treatment of Fixed and Mobile Termination Rates in the EU," May 2009.
- [2] Ofcom, "Wholesale Mobile Voice Call Termination Market Review," Apr. 1, 2010.
- [3] EC, "15th Progress Report on the Singl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Market," 2009.
- [4] EC, "Further Steps towards the Consolidation of the Internal Market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June 1, 2010.
- [5] EC,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Market Reviews under the EU Regulatory Framework(3rd report)," June 1, 2010.

● 용 어 해 설 ●

착신접속료: 통신망 간 상호접속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신망사업자가 착신망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망 이용 대가를 의미함.

순수증분비용: 착신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회피가능한 비용으로 서비스 간 공통비 및 착신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착신서비스 증분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말함.

BUM(Bottom-Up Model): 상향식 증분비용 산정 모델을 말하며 주어진 서비스 증분(통화량, 가입자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통신망을 재설계하여 증분비용을 도출하는 방식을 말함.